



시간강사에 관한 규칙

규정번호	3-2-6
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13.06.01
개정번호	Ver.6 총페이지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시간강사의 자격기준, 위촉절차 및 기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시간강사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대학졸업자는 2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4년 이상인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2.9.26>

② 제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담당 학과목의 성질상 제1항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
2. 학력 미달자라 할지라도 해당분야의 권위자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일 때

③ 시간강사의 연령제한은 6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본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교원은 예외로 한다.

제3조(경력환산) 제2조의 시간강사 자격기준에 필요한 교육경력은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교의 교육경력에 한하며, 연구경력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제4조(시간강사 위촉) 시간강사는 해당 학부(과)장이 [별표 1]의 추천서 및 [별표 3]의 시간강사 학부(과) 서류 심사표를 개강 10일 전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1>

제5조(담당시간) 시간강사는 주당 12시간 이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규정의 개정) 이 규칙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위촉된 시간강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사 추천서

학년도 제 학기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	
	한자					직장	
현주소					담당과목		
					주당시수		
현재직기관명					직급		

추천내용

년 월 일

[추천자] 직급 : _____ 성명 : _____ (인)

_____ 학부(과)장 성명 : _____ (인)

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2]

시간강사 위촉 예정 추천자 명단

학년도 제 학기

연번	성명	담당과목	주당 시수	현 재직기관명 및 직위	비고	
					현재	신규
1						
2						
3						
4						
5						
6						
7						
8						
9						
10						

첨부 : 이력서 부, 추천서 부.

년 월 일

학부(과)장 : _____ (인)

※ 신규자는 필히 이력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신설 2013.6.1.>

시간강사 학부(과) 서류 심사표

학부(과)	성명	담당과목

평가 항목 및 배점	평 가 기 준	기준점수	점수	비고	
담당과목과 학위와의 연관성 (50점)	학부전공, 석·박사학위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매우 우수	50	<input type="checkbox"/>	
		우수	40	<input type="checkbox"/>	
		보통	30	<input type="checkbox"/>	
		미흡	20	<input type="checkbox"/>	
		매우 미흡	10	<input type="checkbox"/>	
전공우수성 (30점)	교육경력, 연구경력, 수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매우 우수	30	<input type="checkbox"/>	
		우수	24	<input type="checkbox"/>	
		보통	18	<input type="checkbox"/>	
		미흡	12	<input type="checkbox"/>	
		매우 미흡	6	<input type="checkbox"/>	
잠재역량 (20점)	실무능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과발전 기여 역량 평가	매우 우수	20	<input type="checkbox"/>	
		우수	16	<input type="checkbox"/>	
		보통	12	<input type="checkbox"/>	
		미흡	8	<input type="checkbox"/>	
		매우 미흡	4	<input type="checkbox"/>	
합 계					
기타사항					

※ 학부(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신규임용 자격 대상이 됨

평가자 소속 학부(과) _____ 학부(과)장 _____ (인)